

■ 최신 판례 ■

영화제작사에서 영화 제작을 위해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[대상판결 :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노1443 판결]

이광선 변호사 | 백규하 변호사

영화제작사의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.

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영화제작사 스태프들은 영화제작사의 각 부서장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계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을 뿐인 점을 들어 항소하였습니다.

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스태프들이 고정된 월 급여, 또는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, ②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스태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피고인이 제공하였고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이 대체로 일정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.

해당 법원은 이와 더불어 ① 피고인은 각 부서의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권한을 보유하고, 이를 통하여 스태프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었던 점, ② 스태프들이 어떠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점, ③ 피고인은 스태프의 고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, 스태프들은 구체적 업무 분담과 수행에 관하여 그 상급자 또는 피고인이 위임한 직책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의 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스태프들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